

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노사민정  
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4 월 8 일

여 수 시 장 김경민



여수시 조례 제2066호

붙임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간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”를 “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노사민정간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기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의한다”를 “심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제5호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5. 지역 노동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는 경우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되며, 서기는 사무국 직원이 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실무협회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회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회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사무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협의회”를 “사무국”으로 한다.

③ 사무국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간의 협력방안등을 협의하기 위하여</u>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기능)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<u>협의회</u>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협의한다</u>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</u></li> <li>2. <u>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</u></li> <li>3. <u>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그 밖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li> </ol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<u>노사민정간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기</u> -----.</p> <p>제3조(기능) ----- ----- <u>심의한다</u>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2. <u>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3. <u>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4. <u>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. <u>지역 노동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6. <u>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이 필</u></li> </ol>

제4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제9조(회의개최) ① (생략)

② 협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2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(생략)

<신설>

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-----  
----- 20명 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는 경우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이 되며, 서기는 사무국 직원이 된다.

제9조(회의개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상·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

② (생략)

제11조(사무국) ① (생략)

② 사무국에 사무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<신설>

③ 시장은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<신설>

제15조·제16조 (생략)

서 호선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1조(사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사무국장-----  
- 있으며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사무국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④ ----- 사무국-----  
-----  
-----.

<삭제>

제15조(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·제17조 (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)